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⁶
B65H 67/06

(11) 공개번호 특 1996-0007407
(43) 공개일자 1996년03월22일

(21) 출원번호 특 1995-0006262
(22) 출원일자 1995년 03월 23일

심사청구 : 없음

(54) 테이크업와인더의 도핑장치

요약

본 발명은 테이크업와인더의 스피드(11)에 대하여 정확하게 축심을 맞추게되는 샤프트(9)를 보유하는 도핑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패키지(P)가 겉에서 형성되는 스피드(11)를 보유하는 줄지어 늘어선 테이크업와인더를 따라서 주행가능하게 설치되고 스피드(11)에 대향하여 패키지(P)를 수취하는 샤프트(9)를 승강가능하게 보유하는 도핑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샤프트(9)의 선단부에 스피드(11)의 선단을 검출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그 센서에 의한 선단의 검출에 의거하여 샤프트(9)의 승강을 정지하도록 한 것을 요지로 하며 정지스위치는 스피드(11)의 축심의 높이에 따른 것으로 하고 스피드의 높이에 흐트러짐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선택도〉 제1도.

대표도

도 1

여비서

〔박명이 명치〕

테이크업와인더의 도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테이크업와인더의 도핑장치의 측면도.

卷之三

(57) 성구

패키지(P)가 감겨서 형성되는 스피들(11)을 보유하는 줄지어 늘어선 테이크업와인더를 따라서 주행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한 스피들(11)에 대향하여 상기한 패키지(P)를 수취하는 샤프트(9)를 승강 가능하게 보유하는 도핑장치에 있어서, 상기한 샤프트(9)의 선단부에 상기한 스피들(11)의 선단을 검출하는 센서를 설치하며 그 센서에 의한 상기한 선단의 검출에 의거하여 상기한 샤프트(9)의 승강을 정지하도록 한

二十一

제1항 2
제1항의 있어서, 상기한 센서는 광센서(S)이고 그 광센서(S)가 상기한 스핀들(11) 선단의 중심에 배설된 원형의 반사판(16)을 검출하므로서 스핀들(11)의 상기한 선단을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이크업 원형판(15)을 포함한다.

한국어

제2항에 있어서, 상기한 샤프트(9)의 선단에 설치되는 상기한 광센서(S)는 샤프트(9)의 승강방향으로 설치되는 주정간의 허게 선회되어 있는 것을 톤지으로 하는 텰이크업안인더의 드퍼작동

※ 참고사항 : 최초 층의 내용에 의하여 고개하는 것이

도면

도면1

